

## 전기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金 在 文  
통신開發研究院

### I. 序 論

지난 1년간은 국내외적으로 전기통신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복수사업자에 의한 경쟁체제, 통신개방에 대비한 通信事業構造調整(案)이 발표되었고 국외적으로는 韓美通信協商이라는 쌍무협상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으로서 GATT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우리 通信關聯 法令도 그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電氣通信基本法, 公衆電氣通信事業法을 주로 하고 電波管理法는 전파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부분적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韓國電氣通信公社法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고찰을 하였고 電氣通信工事業法은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구체적인 고찰은 제2장 전기통신관련 법령의 연혁, 제3장 전기통신의 환경변화, 제4장 제1절 기본법, 사업법의 통폐합, 제2절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조건, 제3절 정보통신역무제공업과 회선사용제도, 제4절 상호접속제도, 제5절 통신위원회, 제6절 기타의 법적문제 그리고 제5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분적인 민영화의 순서로 전개한다.

### II. 沿 革

우리의 전기통신 관련 법률은 일제시대의 전신법, 무선전신법에서 시작되어 전기통신법, 전파관리법 등이 제정되었고, 그 후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되면서 政策主體와 事業主體가 분리됨에 따라 전기통신 관련 법령체계를 총괄하는 기본규정의 미비와 새로운 통신서비스 및 규율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전기통신 법령 체계의 전

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전기통신법을 電氣通信基本法과 公衆電氣通信事業法으로 분리 제정하였다. 그 후 1989년 말에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전 기본법 하에서의 정보통신역무제공자의 사업영역은 情報檢索 및 情報處理로 국한되어 왔으며, 정보통신 회선을 이용한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은 수차에 걸친 회선이용제도의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중통신사업자의 독점영역 확보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에서의 公正競爭確保라는 측면에서 동제공업의 개방이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법체계상으로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承認制는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職業選擇의自由를 法律이 아닌 命命의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역무제공업 승인제의 타당성, 입법형식의 타당성 등이 문제되어 이번 개정 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규제방식을 登錄制로 변경하면서 이를 기본법상에 명시하여 앞서 언급한 지적을 불식하였다. 그리고 기본법상 ‘他人通信媒介’라는 공중통신사업자의 법적사업기반이 체신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점차 제거됨으로써 정보통신역무의 개념 정립이 요구되자 개정기본법에서 정보통신역무의 개념 규정을 통해 단순한 情報檢索, 情報處理라는 형태를 넘어 情報의 媒介라는 개념까지 정보통신역무에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개정전 사업법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중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의 참여에 의한 경쟁적 경영에 대비하여 동법을 다수의 공중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체제로 정비하고, 기본법에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제가 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또 공공의 이익 및 사회복지의 증진,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라는 차원에서 사업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규정의 신설 혹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은 자본금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 그 자본금의 일부를 민간에서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어 주식제도를 도입하였고, 전기통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이 분야의 대외경쟁력 배양을 위해 공사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공사가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게 되어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 등이 그 중요한 특색이다. 따라서 공사는 주식제도 도입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순수한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상당한 정도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양 성격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 Ⅲ. 電氣通信의 環境變化

개정 전 사업법 하에서는 공중통신사업자중 法定事業業者인 KTA만 독자적으로 공중통신망을 설치보전할 수 있었으나, 사업법 개정에 의해 기타의 공중통신사업자도 공중통신망의 설치, 보전이 가능하게 되어 공중통신사업자 상호간의 경쟁체제 도입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공중통신망 설치에 있어 경쟁원리를 도입할 경우, 그것을 이제까지 독점으로 하여왔던 가장 큰 이유인 중복설비로 인한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쟁은 도입하였지만 불가피하게 통신사업의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체신부가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른다면 사업자는 크게 회선의 보유유무를 기준으로 基幹通信事業者와 附加通信事業者로 구별하고 전자는 다시 통신설비의 규모가 전국적이냐에 따라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우 통신사업자는 전국적 규모의 통신설비를 보유하는 一般通信事業者와 자기업무용 통신설비를 보유한 特定通信事業者, 전혀 회선을 보유하지 못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附加通信事業者로 구분된다.

기존의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된다라는 점에 관해서는 별 의문이 없으나 공중통신사업자중 어떤 사업자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가 되는지는 제품 서비스의 종류, 경쟁의 필요성, 기존 사업자의 성격 및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체신부의 정책적 의지에 맞추어 분류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분류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영역 조정은 필연적일 것이라 보여진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전기통신분야 선진국에서 경쟁사업자의 등장, 국가독점사업자의 민영화 등이 80년대 국제 전기통신 환경이었다.

국제간 통신분야의 무역협상으로는 85년 시작된 미·일간의 MOSS협약, 87년 3월의 미·일간의 국제 VAN 합의, 88년 5월 영·일간의 국제 VAN 합의 그리고 88년 10월의 미·영간의 국제 VAN 합의, 미국과 EC간의 통신 무역협상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통신협상, 그리고 최근의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1989년말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개정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민영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간 회선사용제도의 완화라는 예외적인 수단으로 인정하던 VAN사업을, 1989년말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을 법정사업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1990년 10월 8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통신 역무제공업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다.

또한 한·미 통신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체신부고시 제65호로 '전기통신표준제정에 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민간주도의 표준화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유선 기기 인증절차에서는 여기까지의 시험검사, 사용승인, 형식승인의 3가지 인증절차를 형식승인 하나로 통합하였다.

### Ⅳ. 基本法, 事業法에 관한 考察

기본법, 사업법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기본법, 사업법 그리고 전파관리법 등의 위상관계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법과 전파관리법과의 관계를 보면, 양법이 모두 전기통신 분야의 관리를 위한 법이나 후자는 전파라는 전달매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본다면 양자관계는 一般法, 特別法의 관계에 있다. 기본법과 사업법의 관계는 기본법과 전파관리법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규율의 범주적 동일성, 규정의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로 규율하는 측면을 달리 하고 있다고 볼 때 양자는 衝突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相互補充關係에 있어 一般法, 特別法의 關係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본법, 사업법은 반드시 구별해서 규율할 필요는 발견할 수 없으나 서로 규율하는 측면

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법의 분리 내지 통폐합의 문제는 論理必然의인 問題라기보다는 立法政策的 裁量의 問題라 보여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볼 때 기본법 제7조와 제7조의 2는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조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사업법 제4조, 제5조와 관련성이 크므로 사업법으로 가야할 조문으로 보여진다. 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분류를 기본법, 사업법 어디에서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나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라는 성격이 인정되므로 이를 시장진입조건과 함께 규율함이 실질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본법에서 규정함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사업법 제2조의 정보통신 개념규정도 기본법상의 정보통신역무의 개념규정과 같이 둘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기본법으로 옮겨야 할 조문이고, 그 외에도 사업법상 몇개의 조문에 대해서도 기본법에서 규율함이 타당하게 보여진다.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조건은 현행법상 法定, 指定, 登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후에는 指定, 許可, 登錄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의 법적의미는 행정법상 허가이므로 허가라는 용어로 대체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간에 허가요건을 달리 하면서 특히 일반통신사업자의 허가요건에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허가한다는 요건을 삽입시킴으로써 시장진입을 주무관서인 체신부의 정책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정보통신역무도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일부였고 따라서 공중전기통신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업법에서 공사와 정보통신회선 사용계약을 맺고 공중통신사업자가 아닌 자도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정보통신회선의 타인사용, 공동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체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막연한 구 사업법 시행령상의 기준에 의해,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광범위하게, 그것도 체신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인정해 준 것은 법체계를 무시하고 행정의 편의만을 생각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이러한 비난을 감안하고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이 광범위하게 등장함에 따라 1989년말, 기본법, 사업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역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 역무제공업 제도를 규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登錄한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공중전기통신 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는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기본법 제7조의 2), 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 登錄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업법 제73조의 2)

이에 따라 1990년 10월 8일 개정된 사업법 시행령에는 국내에 한정된 타인통신매개가 없는 DB, DP 사업의 경우는 등록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정보통신 역무제공업 등록기준을 규정하였는데, 그 기준에서 허용해 준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는 이용자가 전송한 정보의 내용 또는 형태를 변경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EDI, MHS 등), 이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코드 또는 통신 규약등을 변경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축적 전송하는 서비스(E-mail) 등이며 그 외에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체신부장관이 고시에 의해 서비스를 추가로 허용해 주도록 하였다.(사업법 시행령 제124조의 3)

개정전의 체신부고시에 의한 情報通信役務承認基準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영권을 외국인이 지배하는 경우 승인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개정된 제도에 의하면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의 경우 외자에 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제한만이 예상된다. 또 회선사용제도를 개정하여 정보통신회선이 교환회선(일반교환회선 또는 정보교환회선)인 경우 비영리목적의 사용이면 타인사용을 전면 허용하였다.(개정 사업법 시행령 제74조의 2호)

또한 특정통신회선인 경우는 국내사용에 한정되어지고, 특정통신회선에 회선분할장치를 접속하여 그 장치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하는 자 상호간의 통신을 매개하고자 하는 경우(회선 재판매) 또는 특정통신회선에 교환설비를 접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단순교환)가 아닌 한도에서 타인 사용을 허용하였다.(개정 사업법 시행령 제74조 3호)

또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은 마찬가지로 국내사용에 한정되어지고, 회선 재판매 또는 단순교환이 아닌 한도에서 허용하였으며, 국제사용의 경우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상호간에, 회선 재판매 또는 단순교환의

경우가 아니고 사용목적에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한도에서 허용하였다. (사업법 시행령 제73조 2항, 3항)

개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으로서 첫째, 정보교환회선의 경우 非營利目的의 타인 사용은 전면허용하였고, 영리목적의 타인사용에 관해서는 개정된 사업법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 업무제공업의 등록기준에서, 허용되는 정보통신사업 내용이 - 규정되어지고(E-mail, EDI, MHS등), 기기서 허용되어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타인사용이라는가 공동사용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진세하에 영리목적의 타인사용의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사업법에서 원칙적으로 特定通信回線의 共同使用, 情報通信回線의 他人使用를 금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 업무제공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는, 회선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사업법에 규정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보통신 업무제공업자가 허용된 사업을 행함에 있어 필요하여 타인사용, 공동사용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몰라도 입법상의 미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情報交換回線의 '非營利目的使用'의 경우 타인사용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하였을 때 '비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정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적이든 교환회선인 경우는 교환회선 보유사업사에 과금이 이루어지므로 bypass의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차라리 정보교환회선의 타인사용의 경우는 영리·비영리 구분 없이 타인사용을 허용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 특정통신회선의 타인 사용의 경우 國內特定通信回線의 경우는 규정이 있으나(개정 사업법 시행령 제74조 3호), 國際特定通信回線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넷째, 專用回線(leased line)의 경우 우리나라는 음성용이면 전용회선, data용이면 특정통신회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음성용 전용회선에도 data를 전송하는 경우가 있고 data용 특정통신회선에도 음성을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회선을 전용회선, 특정통신회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leased line(전용회선)하나로 규율하고, 그 leased line에 실제음성을 전송하는 경우와 data를 전

송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data 전송의 경우 타인사용, 공동사용을 사업법 시행령에서 현재와 같이 허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다섯째, 通信事業構造調整(案)에 의하면 특정통신사업자는 외자를 1/3이내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외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단제적으로 개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정된 통신관계법 규에는 외자 제한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없다. 따라서 외자를 제한키 위해서는 외자 도입법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외자도입법에서 통신부문만을 따로 배어내어 체신부통신사업구조조정(안)에 따라 외자를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相互接續과 관련하여서 현행법은 첫째, 공중통신사업자와 공중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은 기본법 제13조에 의해 적용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체신부고시 제38호에 따라 공중통신사업자간에는 상호접속에 응하여야 할 사업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둘째, 공중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 업무제공업자간의 상호접속은 사업법 제73조 6의 적용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 업무제공업자간의 상호접속도 위의 두번째 경우와 동일하게 체신부장관의 사전승인 사항이 된다. 위와 같은 현행제도는 규제의 필요성, 계약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서 검토할 때, 기간통신사업자간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에 있어서는 인가가 규제방법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부가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의 경우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상호접속과 전기통신기본법 제9조의 설비제공의 개념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상호접속으로 설비의 제공으로도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설비제공과 회선접속의 정확한 개념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遞信部通信事業構造調整(案)에 의해 앞으로는 복수사업자에 의한 경쟁체제를 맞이하게 되었고 따라서 통신사업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의 확보라는 요청이 제기되며,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의 방지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사업자간의 접속료의 적정한 책정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3자적인 공정한 기관이 필요하게 되어, 우리나라에도 통신에 관한 위원회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도입되는 通信委員會는 그 결정과정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구성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직무와의 겸임을 금지하여야 하겠다.

또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의 명의로 행정 처분이 행해지도록 하며, 이의가 있을시 자체의 재심절차를 거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체신부도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는 만큼 그 업무의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i) 복수사업자간의 분쟁의 심의, ii)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심의, iii) 전기통신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행위 예방, 감시, 시정 등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V. 韓國電氣通信公社의 部分的인 民營化

1989년도 말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100% 정부출자지분중 49%까지 민간에게 주식의 형태로 배각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분적인 民營化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민영화작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어느 정도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에 근접시킴이 불가피한 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은 제19조에 “공사는 이 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인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 동법의 적용을 받는 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너무 거리가 있어 주식회사 형태로 근접시키는 것이 공사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기관의 경우는 그 운영조직이 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너무 차이가 나고, 주주총회 제도 등을 조화시켜 도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주무부서(체신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감사원 등의 과도한 규제를 받아 주식회사 형태와 조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민간주주들이 존재하게 되는 한, 더 이상 100% 정부투자기관에 적용하기에 타당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차라리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되어야 하며, 독립적 지위를 누리는 공적기업으로서 특별히 규율할 부분은 정부가 보유하는 51%이상의 주식 의결권의 행사를 통해서 달성하고 이것으로써 부족한 것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따

라 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VI. 結 論

현행법 체제는 연혁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분야의 독점사업자임을, 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00% 정부출자기관임을 전제로 한 입법이다. 통신사업구조조정(안)에 따라 복수사업자의 경쟁체제, 또 VAN사업의 개방 그리고 통신공사의 민영화를 맞이하여 기본법, 사업법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한 바, 우선 기본법, 사업법의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기본법, 사업법의 통합여부는 논리적으로 통합이 타당하다든가 현행 분리체제가 타당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그보다는 전기통신 기본법과 전과관리법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겠다.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율 대상이 유선, 무선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 통신 정책에 관한 기본법이고, 전과관리법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전과라는 특성 때문에 따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과관리법 실패는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또 반복 규정하는 등 기본법과 동떨어져서 따로 운영되어 온 면이 적지 않다. 기본법에서 유·무선을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유·무선 복합서비스가 등장할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이 요청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또 과거 연혁적으로 체신부가 통신사업까지 담당했던 관계로 아직도 체신부가 사업자의 업무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 내지 개입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전기통신공사도 어느 정도 민간사업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또 급변하는 통신기술의 발전과 거대한 외국사업자의 진출 등에 접하여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판매 등이 요구되는 바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이를 저해할 여지도 있음을 고려하여, 체신부의 역할은 사업수행의 면에서는 축소되고 사업간의 공정경쟁이라든가 분쟁의 해결 등 제3자적인 입장에서의 역할, 통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면에서의 역할 그리고 국내산업의 육성책에 보다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또 통신공사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더 이상 100% 정부출자기관에나 적용이 적합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민간기업

으로서의 면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공사도 이에 부응하여 더 이상 독점권 내지 과도한 정부의 보호를 기대해서는 아니되며, 요금에 관해서도 어느정도 요금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확립되고, 경쟁서비스의 영역의 경우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경쟁체제를 맞아 대국민자세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선 기술과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침투해 올 외국사업자의 진출을 눈앞에 두고, 통신공사의 국가기간 사업자로서의 육성이라는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현재 시내전화사업의 경우 과도한 적자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 앞으로 공평경쟁을 위한 회계분리제도와 관련하여 전화요금의 원가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복수사업자 체제하에서는 체신부의 통신정책의 예측성, 또한 정책집행절차의 명료성 등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것을 입법의 형태로 해나가겠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1989.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의제별 협상의 진전상황과 전망”, 1990. 10.  
 [3] 박용상,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 관한 고찰”, 법조, 37권 9호, 1988. 9.  
 [4] 손주찬, 개정상법축소해결,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5] 안문택, 증권거래법체계, 육법사, 1985.  
 [6]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0.  
 [7] 이상규, 실행정법론(상), 법문사, 1987.  
 [8] 이상돈, 권영설, 구광모,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보통신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통신학회, 1989. 12.  
 [9] 전기통신법제연구회편, 축조해설전기통신사업법, 부: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법(제1법규), 1987.  
 [10] 전자신문사, 전기통신연감, 1990.  
 [1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89.  
 [12] 최병일, “통신서비스교역과 우루과이라운드 I”, 통신개발연구원, 통신정책 ISSUE 제2권 10호 통권 18호, 1990. 10.

[13]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1987.  
 [14] 최기원, 상법총칙·상행위, 경세원, 1989.  
 [15] 최창호, “행정조직의 한 형태로서의 위원회제도”, 고시계, 24권 1호, 1979. 1.  
 [16] 통신개발연구원, “전기통신의 국제환경변화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989. 12.  
 [17] 통신개발연구원, “공중통신사업자간 회선 상호 접속 및 요금분배에 관한 연구”, 1989. 12.  
 [18] 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발전협의회 종합건의서, 1989. 11.  
 [19] 통신개발연구원, “전기통신법령정비에 관한 연구”, 1989. 12.  
 [20] 통신개발연구원, 통신개발연구단, “우루과이라운드협상진행 상황과 대응방안”, 1990. 8.  
 [21] 통신정책연구소, 데이터-통신관계법령해설.  
 [22] 한국전기통신공사 대외협력실, “제5차 한미통신회담결과 분석 및 대응과제”, 1990. 3.  
 [23] 한국전기통신공사 대외협력실, “제4차 한미통신회담결과 분석”, 1990. 2.  
 [24] 한국전기통신공사 대외협력실, “GATT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그룹의 제1차 통신분야전문가 회의 결과”, 1990. 6.  
 [25]鈴木實, 통신법체계, 1986.  
 [26] Cary & Eisenberg,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5th Ed.) 1983.  
 [27] Clark, Corporate Law, Little, Brown & Co., 1986.  
 [28] FCC, “The FCC in Brief”, FCC  
 [29]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54th Annual Report/Fiscal Year 1988., FCC.  
 [30] Hen & Alexander, Laws of Corporations(3rd Ed.), 1983.  
 [31] Olivier Long, “Law and its Limitations in the GATT Multilateral Trade System”,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32] Squire, Sanders & Dempsey, “해외전기통신법 비교 연구”,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1990. 8.

\*이 연구보고서는 통신개발연구원의 전기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90-I-09)에서 발췌한 글임.

筆者紹介
------

---

金 在 文      1958年 9月 16日生  
1981年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84年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1985年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법학석사)  
1988年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법학박사)

1989年 9月~1991年 3月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